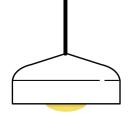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921-10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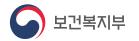
복지서비스

노령층















4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 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의 내용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 M하TI의 | 01 기초연금제도 | 04 |
|---------------------|----------------------------------|----|
| 생활지원 | 02 긴급복지 지원제도 | 05 |
| | 03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07 |
| | 04 노후준비서비스 | 80 |
| | 05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09 |
| | 06 은퇴금융 아카데미 | 11 |
| 주거지원 | 07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 12 |
| | 매입임대주택 지원 08 주택연금제도 | 13 |
| | 09 행복주택 공급 | 14 |
| | 00 001 000 | 17 |
| 건강·의료 | 10 건강보험제도 | 16 |
| 다이 커프 | 1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17 |
| | 1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18 |
| | 13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19 |
| | 14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 20 |
| | 15 노인 틀니 지원 | 21 |
| | 16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2 |
| | 17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23 |
| | 18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 24 |
| | 19 치매검진 지원 | 25 |
| | 20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26 |

| 고용·일자리 | 2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6 27 |
|--------|---------------------------------------|----------|
| | 2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29 |
| | 24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 30 |
| | 25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31 |
| | 2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32 |
| 돌봄 | 27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33 |
| | 2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34 |
| | 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35 |
| | 30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 36 |
| | 31 4이기크 비린코리케마 된 나 되어비어 | 00 |
| 법률· | 31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 38 |
| 사회참여 | 32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39 |
| | 33 법률구조 제도 | 40 |
| | 34 온라인 정보화 교육 | 42 |
| | 35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43 |

01 생활지원 기초연금제도

-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2.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그ㅂ | 서저기즈애 | 월 최대 지원 금액 | | | |
|-------------|-----------------------------|--------------------|--|--|--|
| 구분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월 최대 30만 7,500원 |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 | |

- 3.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2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구분 | 지원대상 |
|----------|--|
| 위기 사유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
| 재산 |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2. 내용

| | 구분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 주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만 4,900원 | 최대 6회 |
| - 지 원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 주 지 | 주거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원 |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 최대 6회 |
| |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 부 가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0만 6,700원 | 최대 6회 |
| 지 원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1회 |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1회 |
| | 전기 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1회 |
| | !간 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 등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 |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산기준 상향 -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약 28% 상향 -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2022.1.13. 이후부터 적용)

금융재산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 원 상향 **지원액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 연료비지원 상승

생활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2.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04 생활지원 노후준비서비스

- 1.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 2.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구분 | 지원내용 |
|------------|--|
| 진단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표준지표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 |
| 상담 | 진단을 통해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실천 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 |
| 교육 | 공단 소속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맞춤형 강의 |
| 관계기관 연계 | 타 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
| 사후관리 | 상담시 설정한 과제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희망시 추가 상담 및 정보 제공 |

- 3.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 22일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이 확대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 관련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 전문 자격증 보유현황〉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AFPK(한국재무설계사) | CSA(노후준비컨설턴트) | 사회복지사 |
|----------------|---------------|---------------|--------|
| 35명 | 1,026명 | 4,459명 | 2,328명 |

○5 생활^{지원}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감면내역 | 지원대상 | | | 지 | 원내용 | | 방법 및 문의 |
|-----------|---|--|---|-----------------|--------------------|--|--|
| | 65세 |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 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 | | |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 1544-7788) |
| 교통비 | 이상 어르신 | - 0 | 내한항 | | 국제선 10% 노선은 제외) |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 1588-2001) |
| | |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 | | |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 |
| 문화 활동비 | 65세 이상 어르신 | • 5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대관공연제외) 입장료 50% 할인 | | | | 입장 시 신분증 제시 |
| | | • 4 | 노득·재 | 산요건 만족 | 두시 최대 3 | 0% 할인 | |
| | 65세 이상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 | 에르신이 이 있는 이 있는 이 이 이 있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 소득 | | 360만 원 이히 | | |
| 국민 | 지역가입자 | THAL 0,000 5,0 | | 9,000 만 원 이하 | 1억 3,500 만 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건강 보험료 | | = | 경감률 | 30% | 20% | 10% | (क 1577-1000) |
| |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 | | | | |

| 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법 및 문의 | | |
|----------------|----------------|---|---|-----------|--------------------------|
| 이동통신 통신요금 | 기초연금 수급자 |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의 50% 감면 ■ 월 최대 1만 2,100원 감면 (부가가치세 포함)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 (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 |
| |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
| 각종 공공 요금 | 노인 복지 시설 | 복지 | 복지 | ■ 전기요금 감면 |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 | |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 | |

생활지원 으퇴금융 아카데미

- 1.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 **2.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
-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정규과정: 4주(주1회 3시간, 총 8시간)
- 집중과정: 2주(주2회 4시간, 총 8시간 또는 주4회, 총 1주)
- 특화과정: 일대일 상담 서비스 제공 (세무, 법무, 노후재무설계) 정규과정 또는 집중과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
-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 1~2일(1일 1~2시간, 총 1~4시간)



주거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 고령자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2.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구분 | 지원내용 |
|--------------|------------------------------|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 고령자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 3. 방법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주거지원 주택연금제도

- 1.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3,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6,000원의 연금수령(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2년 2월 1일 기준)

-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 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계층 |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 |
|-------------|--------------------------------|---|--|
| | 일반 사항 | 소득 및 자산 | |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

-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2.시행)
- ※ 공급비율: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 **2. 내용**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 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 **4. 문의**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건강·의료} **건강보험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
| 요양비 |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 |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
|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의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 2. 내용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3.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자주 묻는 질문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료}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대상

| 구분 | 지원대상 | |
|------------|------------------------------------|--|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 |

2.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노인 안검진 |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 원 예상 |

- 3.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건강·의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1.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2.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 **4.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www.ok6595.or.kr)

건강·의료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30% | 10~20% | 10% | 20% |

- 3. 방법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료 **노인 틀니 지원**

1. 대상 ■ 완전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시

■ 부분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30% | 5~15% | 5% | 15% |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법

- ①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②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당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 잘 때는 꼭 빼주세요.
- ⑤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건강·의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4. 문의**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건강·의료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1.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2. 내용

| 구분 | 접종내용 |
|-------|--|
| 폐렴구균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
|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 |

- 3.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
 -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 ※ 지정 의료기관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
- 4.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자주 하는 질문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18)

건강·의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 **1. 대상** 지역 주민
- 2. 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음주폐해 예방(절주)
 - 신체활동
 - 영양
 - 비만 예방관리
 - 구강 보건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하의약 건강증진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 여성어린이 특화
 - 지역사회중심 재활
 - 금연
 - 방문 건강관리
 - 치매관리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신청
-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의료} **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
|------|--|--|--|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 |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 원 한도 내) 지원 | |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 |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건강·의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고용·일자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1. 대상**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2.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3. 방법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계속고용제도도입→취업규칙변경신고→정년근로자계속고용→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일자리 2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 구분 | | 지원대상 |
|-----------|-------------------|-------------------|
| 사회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활동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만 60세 이상 |
|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
| 노인 일자리 | 시장형사업단 | 만 60세 이상 |
| | 취업알선형 | |
| | 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 |
| | 고령자친화기업 |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 구분 | 지원내용 |
|-----------|--------------------------|---|
| 사회 활동 | 공익활동 |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 노인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월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
| | 시장형사업단 |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

| | 구분 | 지원내용 |
|-----------|---------|---|
| | 취업알선형 |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
| 노인 일자리 | 시니어인턴십 |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
| | 고령자친화기업 | ■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

- 3.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 4.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안내 (☎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소득으로 보나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고용·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1. 대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 2. 내용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 3. 방법
 지자체 선정(고용부) → 수행기관 선정(자치단체) →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 4. 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또는 수행기관



고용·일자리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 **1.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 2.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 오프라인 신청
- 4. 문의 워크넷(www.work.go.kr)
 ※ [정부지원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일자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1. 대상 만 40세 이상으로서 기술창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예비)퇴직자

| 2.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 | 기술창업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주관기관 운영비, 창업공간, 상담 및 자원, 커뮤니티 운영, 기술창업교육 제공 | |

3. 방법 K-스타트업 회원가입 →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 기술창업센터 이용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4. 문의 K-스타트업(☎1357 내선번호 3번, www.k-startup.go.kr)

26 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1.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2.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 안전지원 | 방문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 |
| | | 전화안전지원 |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
| | | ICT안전지원 |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 |
|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사회참여 |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
| | | 자조모임 | - 자조모임 | |
| |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
| | | 정신건강분야 |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 |
|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 외출동행 | |
| | | 가사지원 | - 식사관리, 청소관리 | |
| 연계서비스(민간후원지원) |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 | |
| 특화서비스 |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 |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돌봄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1.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 2. 내용

|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협력체계 구축사업 | 홍보사업 |
|-------------------|----------------|---------------|--------------|
| - 전문상담 및 | - 노인학대 | - 중앙·지역노인 |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 심리치료 지원 | 예방교육 | 학대사례 판정 | - 학술행사, 캠페인 |
| - 일시보호서비스, | – 노인인권 교육 | 위원회 운영 | - 이동상담 |
| 의료지원 | | - 지역사회 |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 - 사회복지서비스, | | 연계망 구축 | - 노인학대예방의 날 |
| 법률지원 연계 | |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6.15) 기념행사 |

- 3.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 **4.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노인학대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비밀은 보장됩니다.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28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 2.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
|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 |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 | |
|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 | |

-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치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2.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 3.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지자체, 지역센터 등) → 대상자 발굴(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 수행기관)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승인 → 서비스 제공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돌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 **1.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2. 내용** 병원·시설보다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 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 연계·통합 안내 및 제공
 - ※ 각 지자체별로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 보건의료, 방문건강관리, 돌봄, 요양 및 식사·이동 지원 등 서비스 연계·제공
- 3. 방법 신청기관: 16개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등
 - ※ 지역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다양한 모형 개발·검증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을 추진, 16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중('19.6~'22.12)



4. 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 선도사업 지자체 | 부서 | 전화번호 | | |
|------------------|-------------------|---------------|--|--|
| ■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 | | | | |
| 광주 서구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 062-350-4839 | | |
| 경기 부천시 | 통합돌봄과 | 032-625-9012 | | |
| 충남 천안시 | 복지정책과 | 041-521-5361 | | |
| 전북 전주시 | 통합돌봄과 | 063-281-2831 | | |
| 경남 김해시 | 시민복지과 | 055-330-4683 | | |
| 부산 북구 | 희망복지과 | 051-309-5112 | | |
| 부산 부산진구 | 희망복지과 | 051-605-4781 | | |
| 경기 안산시 | 복지정책과 | 031-481-2865 | | |
| 경기 남양주시 | 복지정책과 | 031-590-8678 | | |
| 충북 진천군 | 주민복지과 | 043-539-4322 | | |
| 충남 청양군 | 통합돌봄과 | 041-940-2942 | | |
| 전남 순천시 | 노인복지과 | 061-749-6241 | | |
| 제주 서귀포시 | 주민복지과 | 064-760-2852 | | |
| ■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 | ■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 | | | |
| 제주 제주시 | 주민복지과 | 064-728-3042 | | |
| 대구 남구 | 행복정책과 053-664-254 | | | |
| ■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자체 | ■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자체 | | | |
| 경기 화성시 | 보건정책과 | 031-5189-3707 | | |



법률·사회참여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 **1. 대상** 1인 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
- 2. 내용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 (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
- 3.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12개소)* 이용
 - *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북구, 인천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문경시, 경상남도 양산시
- **4.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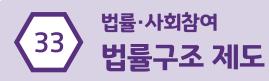
알려드립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이란?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법률·사회참여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1.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쪽방,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없는 노인
 - 활동 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제한적으로 사회적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해 외부출입이 어려우며 우울증 진단을 받은 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2. 내용 방문상담, 집단활동(나들이 및 문화체험 등),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3. 방법 노인복지관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 4.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1.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40만 1,4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768만 1,620원) 이하 농·어업인
- **2. 내용**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 중위소득 | 「リ人トエしつ 日 | 소송 | 소송비용 | |
|------|----------------------|--------|-------|--|
| 기준 | 대상자구분 | 변호사 보수 | 소송 비용 | |
| | 국민 | 유료 | 유료 | |
| |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 무료 | 무료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무료 | 유료 | |
| | 전시납북자가족 | | | |
| | 영세담배소매인 | | | |
|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 | | |
| | 미혼부 | | 무료 | |
| | 소상공인 | | | |
| | 북한이탈주민 | | | |
| | 범죄피해자(재산) | | | |
| | 소액임차인 | | | |
| | 국가유공자 | 무료 | | |
| 125% | 보훈보상대상자 | | | |
| 이하 | 독립유공자 | | | |
| | 5·18민주유공자 | | | |
| | 참전유공자 | | | |
| |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 | | |
| | 특수임무유공자 | | | |
|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 학교폭력피해자 | | | |
| | 경찰·소방공무원 | | | |
| | 예술인 | | | |
| | 소규모 중소기업인 | | | |
| | 의료사고피해자 | | | |
| | 국내거주 외국인 | | | |
| | 범죄피해자(신체) | | | |

| 중위소득 | FUALTED H | 소송비용 | |
|------------|--|--------|-------|
| 기준 | 대상자구분 | 변호사 보수 | 소송 비용 |
| 125%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양육,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결혼이민자·귀화허가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 무료 | 무료 |
| 150%이하 |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농업인·어업인 | | |
| 130/00 0 | | | |
| 소득기준 예외 |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 | |
| |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 | |
| |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 | |
| |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 |
| | 불법사금융피해자 | | |
|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 |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법률·사회참여 24 온라인 정보화 교육

- **1. 대상** 전국민
- 2. 내용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나라 누리집(www.estudy.or.kr)에서 PC, 모바일, OA, 신기술 등 ICT활용 교육을 무료로 제공
- **3. 방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나라 누리집(www.estudy.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4.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배움나라(☎1577-6830, www.estudy.or.kr)

법률·사회참여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1. 대상** 60세 이상 국민
- 2. 내용 문화예술교육(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예술동아리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
- 3. 방법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 **4. 무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2311~3)

알려드립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더 보기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어르신의 욕구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어르신문화예술동아리: 어르신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 ■어르신&협력프로젝트: 어르신과 청년/어린이가 문화예술을 매개로 만나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아마추어 어르신 문화예술단체(동아리 등)의 찾아가는 공연

펴낸곳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본부 범부처정보관리부

인쇄 2022년 4월 **디자인** 디자인영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921-10

※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